

# **「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」 입안계획서**

## **1. 행정규칙명: 「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」 [관세청 훈령 제2207호, 2022.6.28.]**

## **2. 개정사유**

-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편익 향상 및 부과절차 등의 미비점을 보완하고, 훈령의 법적합성, 명료성 등 개선

## **3. 주요 개정내용**

-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편익 향상(§8)
  - 과태료 부과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제출기간 연장(15일→20일)
  -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의견심의 등 행정청의 사유로 자진납부기간 경과 시 자진납부 기회 재부여 근거 신설
  -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활용하여 감경사유 확인 시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감경신청이 없어도 감경 적용 근거 신설
-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확인·조사절차 개선(§7, §8, §13)
  -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위반행위 확인 시 이메일, 팩스 등 간이한 방법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
  - 필요 시 위반행위 조사 및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절차 간소화
  - e-mail 등 전자적 매체를 활용한 과태료 부과(예정) 통지 근거 신설
  - 과태료 위반행위 누적 방지를 위한 정기점검 절차 명확화
- 훈령의 법적합성, 명료성 등 개선
  - 관세법 제277조의3 신설('22.12.31) 등 관세법령 개정 사항 반영
  - 행정규칙 입안기준 등에 따라 조문 및 서식의 구조, 표현 등을 정비

## **4. 신·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전문 : “붙임”과 같음**

## **5. 시행일자 : '23. 12. 22.**